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6나204753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6나20475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합52791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변론 종결 2016. 11. 2.

판결 선고 2016. 12. 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합52791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4. 12. 17. 체결된 채권양도 양수계약을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원고의 주장,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가항,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10행 "B"를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로 고친다.

○ 제3면 밑에서 5행 끝에 "제1심에서 원고가 B와 C를 상대로 298,274,547원 및 그 중 298,273,980원에 대하여 2015. 4.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연대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분이 2015. 5. 7. B와 C에게 송달되었는데, B와 C가 제1차 변론기일인 2015. 7. 8. 11:10에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5면 밑에서 2행 "성립되었다" 다음에 "(사실상 2015. 1. 28. B가 폐업하였다)"를 추가한다.

2. 사해행위 여부 및 피고의 선의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 등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판단

갑 제5, 7호증, 을다 제1, 2, 3, 5, 7, 8호증, 을라 제1, 3, 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법원의 국토교통부, D, 주식회사 대영케이블(이하 '대영케이블'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① 피고는 2012년부터 B에 전선용 구리선을 공급해 왔는데, 그에 따른 미수금액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4. 12. 17. 당시 2,794,237,775원(2014년 11월까지의 공급분 1,697,023,323원 + 2014. 12. 1.부터 같은 달 17일까지의 공급분 1,097,214,452원(12월 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146,925,652원 - 2014. 12. 24. 공급분 49,711,200원)에 달하였다.

2014년 5월부터는 B가 주식회사 대한엠앤씨로부터도 전선용 구리선을 공급받아 왔으나, 그 규모는 최대 월 419,688,325원이었고, 그 대금은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 2014. 12. 17. 당시 미지급금이 없었다.

② 2014. 12. 17.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으로는 D에 대한 402,613,879원의 물품대금채권, 대영케이블에 대한 2014년 11월 공급분 243,024,869원 및 12월 공급분 368,176,938원(2014. 12. 29.까지의 417,888,138원 - 같은 달 24일 공급분 49,711,200원) 합계 611,201,807원의 물품대금채권, 중원금속 주식회사(이하 '중원금속'이라 한다)에 대한 1,672,765,278원의 물품대금채권, 총 2,686,580,964의 채권만이 있었는데, 중원금속에 대한 채권은 사실상 변제받기 어려운 것이었다. 반면 B의 소극재산으로는, 그 대표이사 C 소유의 부동산으로 전액이 담보되어 있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490,000,000원)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위 2,794,237,775원의 채무가 있었다.

③ B는 자신이 보유한 물품대금채권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즉 2014. 12. 17.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대영케이블에 대한 2014년 11월, 12월 공급분 채권도 양도하였다가, 2014. 12. 24. 49,711,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대영케이블에 공급한 후, 2014. 12. 29. 대영케이블에 대한 2014년 12월 공급분 채권의 양도계약서를 채권액을 417,888,138원으로 고쳐 다시 작성하였고, 아울러 중원금속에 대한 채권도 양도하였다. 피고는 이처럼 채권을 양도받아 D으로부터 400,269,408원, 대영케이블로부터 586,489,778원 합계 986,759,186원을 변제받았다.

④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의 대표이사 C가 피고의 직원에게 제시한 변제계획에 따르면, B가 2014년 11월까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잔대금이 약 17억 원이고, 12월에 약 16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으면 잔대금이 약 33억 원에 달하게 되는데, 피고로 하여금 12월에 약 13억 원, 2015년 1월에 약 5억 원을 수금하게 해주고, 나머지 약 15억 원은 2015년 1월부터 대금을 선지급하고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위 5억 원 수금 후 25개월간 매월 60,000,000원씩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B가 자신이 매출처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을 전부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 별다른 영업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선지급하며 물품을 공급받고 나아가 매월

60,000,000원씩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소요될 자금의 조성방안을 수립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⑤ 위 변제계획에 따르면 B가 2014년 12월에 피고로부터 추가로 약 47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을 예정이었으나, 피고는 B에 2014. 12. 24. 그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49,711,200원 상당의 물품만을 공급한 후, 2014년 12월에 양수채권 중 6억 원만이 변제되는 등 위 변제계획에 따른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B에 대한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이에 B는 2014. 12. 31. 주식회사 대한엠앤씨로부터 198,360,31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기도 하였으나, 그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2015. 1. 28. 사실상 폐업하였다.

⑥ 각 채권양도계약서에, 양수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조로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양수채권의 만족을 얻은 때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며, 양수인이 양수채권의 추심을 위한 법률행위를 양도인의 부담으로 즉각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B의 대표이사인 제1심 증인 C는 "2014. 12. 15. 정도에 (A에서) 12월이기 때문에 12월 말 수금계획을 알려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중원금속이 수금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수금이 지연될 것이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A에서 17일에 와서 못 믿겠으니까 대신 물건은 계속적으로 공급해 줄 테니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써 달라고 해서 증인이 12월 17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써 주고 조건부로 물건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다는 조건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써 주게 된 것입니다", "12월 15일경에 (A의) 담당자로부터 12월 말에 자금이 많이 달리니 수금계획을 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12월 말에 약정대로 결제를 못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A에서 채권양도계약을 바로 작성하고 대신 조건은 물건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채권양도계약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진술에 나타난 채권양도 경위에 비추어, B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피고로부터 추가로 공급받을 물품의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채무의 변제 방법으로 행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미 B와 피고가 B의 중원금속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B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311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B로부터 D에 대한 402,613,879원의 채권을 양도받아 D으로부터 400,269,408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는 원고에게 298,274,547원 및 그중 298,273,980원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5. 7.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당시 변론종결일인 2016. 11. 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390,388,089원($298,274,547\text{원} + 298,273,980\text{원} \times 0.12 \times 31\text{일}/365\text{일} + 298,273,980\text{원} \times 0.2 \times 545\text{일}/365\text{일}$,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결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위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재판장판사이원범

판사오현규

판사김봉원

별지